

공 시 송 달 공 고

국·공유재산내 무단점유 시설물 소유자에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 및 국유 재산법 제74조에 의거 원상복구(자진철거)할 것을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계고하였으나 수취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3. 9.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1. 제목 : 국·공유재산 원상복구(무단점유 시설물 자진철거) 계고
2. 공고 대상자 및 대집행할 대상물

| 공고 대상자 | | 대집행할 대상물 (무단점유 시설물) | | 비 고 |
|--------|-------------------------------|------------------------|---------------|--------------|
| 성 명 | 주 소 | 점유지번 (국·공유재산) | 점포명(유형) | |
| | 신당동 779, 791 내 무단점유시설물 소유자 | 신당동 779,791 | 노점 | 현장사진 참고 |
| 김 영 식 | 서울 중구 퇴계로87길 | 신당동 779 | 분식노점 (떡볶이) | 현장사진 연번3 |
| 박 만 용 | 서울 중구 퇴계로88나길 | 신당동 779 | 루비스타 | 현장사진 연번4 |
| 정 막 례 | 서울 중구 퇴계로73길 | 신당동 779 | 슈크(벨트) | 현장사진 연번6 |
| 김 복 희 | 서울 중구 퇴계로73길 | 신당동 779 | 제일치킨 | 현장사진 연번8 |
| 이 영 복 | 서울 중구 퇴계로88나길 | 신당동 779 | 삼성비니루 | 현장사진 연번9 |
| 장 인 환 | 서울 중구 마장로 64 | 신당동 779 | 대원청바지 | 현장사진 연번15 |
| 정 동 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북원4길 | 신당동 779 | 성지의류 | 현장사진 연번16 |

3. 공고기간 : 2012.03.10.~2012.03.23.(14일간)

4. 공고내용(송달할 계고서의 내용)

가. 국·공유재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79,791번지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상행위를 함에 따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등) 및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철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하오니 2012.03.23.(금)까지 무단점유 시설물을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구에서 강제철거를 집행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고하는 바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02-3396-6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현장사진 1부.
- 공시송달서 1부.
- 계고서 1부. 끝.

신당동 779, 791내 불법시설물(노점) 현장사진

연번1



연번2



연번3



연번4



연번5



연번6



연번7



연번8



연번9



연번10



연번11



연번12



연번13



연번14



연번15



연번16



연번17



연번18



연번19



연번20



공 시 송 달 서

1. 의무자의 주거, 성명 : 공시송달공고문 참고
2. 대집행할 대상물 및 그 소재지
: 서울 중구 신당동 779, 791 내 무단점유시설물(노점)
3. 송달할 서류의 종류 : 계고서

의무자에게 송달할 서류가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79, 791 무단점유시설물(노점) 소유주 귀하

계 고 서

주 소 : [공시송달공고문 참고]

성 명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79,791번지 무단점유시설물(노점) 소유주

※ 공시송달공고문 참고

귀하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재산(신당동 779, 신당동 791번지 도로)을 무단점용하여 상행위를 함에 따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 철거)에 의거 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를 명령합니다. 아울러 아래 기한내 이행치 않을 경우 우리구에서 강제철거를 집행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징수할 예정입니다.

원상복구(자진철거) 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779,791번지 도로내 무단점유시설물(노점)

※ 공시송달공고문 참고

원상복구(자진철거) 기한 : 2012.03.23.(금)까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철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고하는 바입니다.

2012. 3. 9.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79, 791번지 도로내 무단점유시설물(노점) 소유주 귀하